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0-8호
2020. 1. 31.(금)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차 례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43호) ·····1

고 시(2)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고시 제2020-11호) ·····5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0-12호) ·····6

공 고(5)

-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세부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0-94호) ·····7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0-95호) ·····13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변경) 공고(공고 제2020-100호) ·····14
- 대형폐기물 처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공고 제2020-104호) ·····15
- 산업단지 쓰레기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공고 제2020-105호) ·····18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106호) ·····21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4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직 등의 정수표 (제7조 관련)

(단위 : 명)

직종별 / 부서별	계	단순노무	기술인부	공사인부	환경관리요원	행정실무원	청원경찰		
							소계	경비	단속감시
총 계	213	38	14	28	89	36	8	5	3
본 청	181	30	13	28	89	13	8	5	3
기획홍보실	2	2 구정홍보자료수집 1 구정전략홍보사무 1							
총무과	16	11 취사인부 4 비서실 민원처리 보조 1 비서실 및 부속실운영지원 2 복무관리 시스템 운영 1 4대보험 및 상시학습업무지원1 청사실내청소 2	1 영양사	2 청사실외청소			2	2	
문화체육과	3	2 체육관리					1	1	
회계정보과	1	1 전화안내원							
세무과	1		1 체납징수						
민원봉사과	3	3 기록물관리 2 가족관계등록관리 1							
지적과	2	2 도로명주소관리 1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 1							
기후환경과	92		2 불법투기단속	1 재활용인부	89 환경관리요원				
복지정책과	5					5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과	5	2 장애인편의시설관리 1 노인일자리관리 1				3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여성가족과	5					5 드림스타트4 특화분야교사1			
도시계획과	3						3		3
안전총괄과	1	1 민방위시설관리							
공원녹지과	13	1 민원안내 및 전시시설 관리		10 공원녹지관리			2	2	
건축과	4		4 광고물정비 3 위반건축물정비1						
건설과	21	1 지하수검침	5 노점상단속	15 도로보수 8 하수도보수 7					
교통과	4	4 주차장시설유지관리 2 불법주정차단속업무지원 2							
의회사무과	2	1 의원사무실 의전 및 사무보조	1 음향기기관리						
보건소	17					17 예방접종등록센터 1 통합건강증진사업 15 결핵관리사업 1			
복합문화센터	10	4 도서정리				6 개관시간연장사업			
동	3								
송촌동	2	2 송촌문화의집관리							
신탄진동	1	1 신탄문화의집관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채용공고) 인사부서에서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 직종의 업무내용, 채용 조건, 채용 자격기준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채용공고) ---------- ---------- ---------- ---------- ---------- ----------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무직 등의 일부 직종에 대한 정수를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0조 단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제10조).

❍ 부서별·직종별 정수를 조정함(별표).

- 기후환경과(환경관리요원) 인원 2명을 증원하고 총무과(청원경찰) 인원 1명 감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1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허가번호 : 제2020-1호

2. 허가연월일 : 2020. 01. 30.

3. 점용·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대덕구청장(비래동장)

○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10(비래동)

4. 점용·사용의 목적

○ 목 적: 경작(비래동 나눔텃밭 조성 및 분양사업)

5. 점용·사용 장소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239-1번지

○ 면 적: 348.13㎡

6. 점용·사용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 2024. 12.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1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오정동 95-8	대전로1157번길 23	2020. 1. 31.	건물신축	대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5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467-26	한남로113번길 23-7	2020. 1. 31.	건물신축	한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읍내동 362-24	아리랑로 156	2020. 1. 31.	건물신축	아리랑 고개의 명칭을 반영	
석봉동 202-7	대덕대로1593번길 12	2020. 1. 28.	건물신축	대덕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9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94호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세부시행계획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 및 아목에 따른 대덕구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3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1조(목적) 본 공고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여가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민간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세부시행계획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실외체육시설의 종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종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아목에 따른 시설이다.

제3조(배분정수) 대덕구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배분정수는 야영장 2개소 및 실외체육시설 2개소이다.

제4조(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및 제22조 [별표2]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신청자격은 마을공동,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하며, 확인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③ 마을공동의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에서 정한 각 법정동 중 '통'의 범위를 마을공동의 최소범위로 한다.

④ 마을공동의 의사결정 방법에 관하여는 마을공동의 규약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약 등이 없으면 마을공동을 구성하는 전체 가구의 대표자(세대주) 과반수 출석과 출석 가구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며,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마을공동 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규약 등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약을 준용한다.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다.

1. 임야인 토지로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2. 임야인 토지로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⑥ 실외체육시설은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선정신청 및 선정자 결정)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신청 및 선정자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별표1】및 구비서류【별표2】를 첨부하여 대덕구청 도시계획과에 방문 접수하여야 한다.(우편, 팩스 및 택배접수 불가)

② 공고기간은 2020년 1월 3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한다.

③ 접수기간은 2020년 3월 2일 09:00부터 2020년 3월 31일 18:00까지로 한다. (단,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접수 제외)

④ 접수기간 내 [별표1]과 [별표2]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접수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 신청자에 대하여 본 공고문 제4조에서 정한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선정

자를 결정하되, 심사에 통과한 신청자가 제3조에서 규정한 배분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개별통지한 일시에 참석한 신청자들의 추첨에 의하여 선정자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위임용)을 지참하여 참석한 대리인이 추첨할 수 있다. 추첨일시 및 추첨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별도로 통보한다.

⑤ 대상자 선정 신청은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1세대 1건(마을공동의 경우 마을당 1건)으로 한하며, 위치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 하거나 동일부지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⑥ 접수기간이 경과한 후 접수된 신청서는 이를 반려한다.

⑦ 사업자로 선정된 후 건축 또는 행위허가 등 신청 시 관련법령에 의한 검토결과, 부적합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

⑧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허가신청서 미제출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로법」,「농지법」,「산지관리법」,「환경관계법령」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 등은 개별법령에 따른 등록 및 인·허가 시 검토한다.

제7조(양도제한 등) 위장·탈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본 공고에 의하여 허가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기타사항)

① 본 고시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서류보완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행위허가 신청 위치는 사업자 선정 시 사업부지 위치와 동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처리) 접수기간으로부터 대상자 최종 선정일까지의 기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별표 1】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 신청서

<table>
<tr><td colspan="2">신청시설</td><td colspan="5">□ 야영장 □ 실외체육시설(세부시설명:)</td></tr>
<tr><td rowspan="3">신청자</td><td>성 명</td><td colspan="5"></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 rowspan="6">신청내역</td><td>해당동</td><td>지번</td><td>지적</td><td>신청면적</td><td>토지소유여부
(임대 또는 소유)</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구비서류</td><td colspan="5">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사업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및 충당내역)
3. 신청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별표1]지정당시 거주자 및 마을공동 확인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5.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또는 토지 소유여부 확인서류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6. 토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의 토지의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1부.
7.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td></tr>
</table>

【별표 2】

지정당시 거주자 확인기준

구 분	확 인 기 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한 자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 하였던 자	○ 공통 - 등기부등본(주택 또는 토지) - 토지대장,일반건축물대장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생업을 위한 증명서류 - 대상 취학 학생의 취학기간이 명기된 생활기록부 또는 졸업증명서

마을공동 설치 확인기준

구 분	확 인 기 준
○ 마을공동(개발제한구역내)	○ 마을공동 대표자 선임서 ○ 마을 공동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약 또는 정관 등 ○ 마을공동 규약 등 제정 및 대표자 선임 관련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 ○ 마을공동 추진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회의록, 의결서 포함) ○ 마을공동 구성원 명단(주민등록초본 첨부) - 해당 마을 거주 확인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95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40-25 외 3필지 상 건축물 건축허가(공용건축물 건축협의)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신탄진동 140-30, 140-33	57.3㎡	4.5m	약 18m	대덕구청장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100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27-37 외 2필지 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975호(2018.12.18.)” 로 지정 공고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적(㎡)	너비(m)	길이(m)	
기존	건축법상 도로지정	오정동 227-37	37.93	6	18.7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227-49 225-22	**38.0**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104호

대형폐기물 처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2020년 대형폐기물 처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 대형폐기물 처리

○ 채용인원 : 2명

○ 근로기간 : 2020년 3월 ~ 7월

※ 근로기간은 사업추진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업 무 : 수거된 대형폐기물(폐매트리스 등)의 고철 분리작업

○ 공고기간 : 2020. 1. 31.(금) ~ 2020. 2. 6.(목)

○ 접수기간 : 2020. 2. 4.(화) ~ 2020. 2. 6.(목)

○ 면접심사 : 2020. 2. 17.(월)

○ 발 표 : 2020. 2. 24.(월)

2.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되어 있는 자

○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3. 채용방법(면접심사)

○ 직무분야 이해도 및 의지력, 적극성

○ 의사표현의 정확성, 품행, 성실성

○ 당해 업무 수행 가능한 노동 능력 및 병·허약 체질 확인 등

4. 근로기준

○ 보　　수 : 73,040원/일

-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자부담금 인건비 공제

- 근무장소까지의 출·퇴근비 및 중식비 미지급(기타 부대경비 미지급)

○ 근 무 일 : 주 5일(주말 휴무), 1일 8시간 근무

- 1주(1월) 만근 시 유급휴일(유급휴가) 부여 또는 1일분 임금 지급

○ 근 무 지 : 대덕구 자원순환센터(대덕구 아리랑로55번길 178)

5. 채용일정

공고기간	원서접수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일　자	장　소	
1. 31.(금) ~ 2. 6.(목)	2. 4.(화) ~ 2. 6.(목)	2. 17.(월)	소회의실 (본관 3층)	2. 24.(월)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대덕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 원서접수 : 2020. 2. 4.(화) ~ 2. 6.(목) 09:00 ~ 18:00 /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장소 : 대덕구 기후환경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전화, 우편, FAX, 온라인 및 대리 접수 불가)

7.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부(초본 : 병역사항 포함)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착오·미비·누락, 자격요건 미달,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 등에 대하여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내용은 대덕구 기후환경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기후환경과(☎608-6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105호

산업단지 쓰레기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2020년 산업단지 쓰레기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산업단지 쓰레기 기동처리반

○ 채용인원 : 3명

○ 근로기간 : 2020년 3월 ~ 11월

※ 근로기간은 사업추진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업 무

- 산업단지 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 업무 수행
- 산업단지 내 불법 투기된 폐기물의 수거
- 관리청이 지시하는 기타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업무 수행

○ 공고기간 : 2020. 1. 31.(금) ~ 2020. 2. 6.(목)

○ 접수기간 : 2020. 2. 4.(화) ~ 2020. 2. 6.(목)

○ 면접심사 : 2020. 2. 17.(월)

○ 발 표 : 2020. 2. 24.(월)

2.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되어 있는 자

○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3. 채용방법(면접심사)

○ 직무분야 이해도 및 의지력, 적극성

○ 의사표현의 정확성, 품행, 성실성

○ 당해 업무 수행 가능한 노동 능력 및 병·허약 체질 확인 등

4. 근로기준

○ 보　　수 : 73,040원/일

-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자부담금 인건비 공제

- 근무장소까지의 출·퇴근비 및 중식비 미지급(기타 부대경비 미지급)

○ 근 무 일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지정
- 1주(1월) 만근 시 유급휴일(유급휴가) 부여 또는 1일분 임금 지급

○ 근 무 지 : 관내 산업단지(대전·대덕산업단지) 및 기타 지정 장소

5. 채용일정

공고기간	원서접수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1. 31.(금) ~ 2. 6.(목)	2. 4.(화) ~ 2. 6.(목)	2. 17.(월) 14:00	소회의실 (본관 3층)	2. 24.(월)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대덕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 원서접수 : 2020. 2. 4.(화) ~ 2. 6.(목) 09:00 ~ 18:00 /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장소 : 대덕구 기후환경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전화, 우편, FAX, 온라인 및 대리 접수 불가)

7.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부(초본 : 병역사항 포함)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⑤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착오·미비·누락, 자격요건 미달,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 등에 대하여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내용은 대덕구 기후환경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기후환경과(☎608-6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10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시 재산 현황사진·상세목록 등을 보존하여 재산표시의 구체화 및 원상복구 대상 논란 예방

3. 주요내용 : 가. 사용·수익허가 재산이 건물일 경우, 건물의 원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사용허가서에 현장사진과 시설물 목록을 첨부하는 단서 조항 추가

나. 대부재산이 건물일 경우, 건물의 원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대부계약서에 현장 사진과 시설물 목록을 첨부하는 단서조항 추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 도로명주소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전화 : 042-608-5303, FAX:042-608-38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 도로명주소팀 담당자 김채언 (전화 : 042-608-53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10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수익허가 재산이 건물일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부 재산이 건물일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 ----. 다만, 사용·수익허가 재산이 건물일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26조(대부계약) ---------- ---------- ----. 다만, 대부 재산이 건물일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대부(사용·수익허가) 재산 현황

○ 현장 사진

출입구	내 부1	내 부2

○ 내부 시설물 목록

연번	시설물	수 량	비 고

○ 건축물 현황도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